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의결

의 안 번 호 제2023-008-086호 (사건번호 : 2020조총0059)

안 건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의 결 연 월 일 2023. 5. 10.

주 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을 명한다.
 - 가. 민감정보 수집 필요시 정보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는다.
 - 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를 제출한다.

이 유

I. 기초 사실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 기관으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피심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종업원 수 (명)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수집하였다는 공익 신고('19.8.21.)와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하여, 피심인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현황

피심인은 '20. 3. 27. 기준 아래와 같이 용역업체에서 채용한 근로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였다.

개인정보파일	목적	수집기간		
신원진술서	성범죄 경력조회	'11. ~ '20. 3. 27.		
건강검진표	근로자 건강진단	'11. ~ '20. 3. 27.		
급여내역서, 임금지급명세서	근로조건 이행확인	'11. ~ '20. 3. 27.		

나. 개인정보 침해 관련 사실관계

1) 신원진술서 수집 관련

피심인이 취업 제한 적용 대상자 선별 및 출입 여부 승인을 위해「청소년 성보호법」(법률 제17893호) 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31354호)에 근거하여 신원진술서를 수집하였다고 소명함에 따라 검토한 결과,

①「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 제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자 등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피심인이 수집한 것은 이와 관계없는 일반 적인 '신원진술서'로서 청소년성보호법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보안업무규정」 제36조(신원조사)는 국정원장이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해 신원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용역업체 근로자들이 국가기밀 취급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심인에게 신원조사 권한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보안업무규정 및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을 피심인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 법률로 볼 수 없다.

2) 건강검진표 수집 관련

피심인이 발주기관으로서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8426호)과「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고용노동부 지침)에 근거 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고 소명함에 따라 검토한 결과,

①「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는 사업주가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용역업체 근로자(정보주체)의 사업주는 용역업체이지 피심인이 아니므로, 해당 법률이 피심인의 건강정보 수집 권한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발주기관이 용역업체가 제출한 근로조건 보호 확약 내용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확인 내용으로 '임금·법정부담금 지급 여부', '포괄적 재하청 금지 여부', '업체변경시 고용승계 여부' 등을 명시하고 있을 뿐 근로자들의 건강정보 수집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개인별 급여내역서 ·임금지급명세서 수집 관련

피심인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 지급한 대금이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고용노동부 지침),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고 소명함에 따라 검토한 결과, ①「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개인 정보 수집 관련 권한을 위임한 근거 법률이 없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고, ② 용역업체 근로자들로부터 급여내역서를 수집하는 방법 외에도 급여 지급 여부를 확인할 다른 방법이 있는 만큼, 법령상의무나 공공기관의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 볼 수 없다.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 3. 16.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2. 4.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가.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15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정보주체의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2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3호),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제4호),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5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제6호)"를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 피심인이 개인정보 수집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보호법 제15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2. 민감정보 수집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

가.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3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제2호)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민감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으나, 피심인이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 없이 용역업체에서 채용한 근로자들의 민감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보호법 제23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15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보호법 제15조제1항 위반에대해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1,000만 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보호법 시행령 제63조 [별표 2]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псеп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1호	1,000	2,000	4,000

나. 과태료의 가중·감경

「과 태료 부과기준」(행정안전부 2019. 10. 7.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은 위반 행위의 내용·정도, 조사 태도 및 시정 노력, 피해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 기준(▲내용·정도 중요, ▲은폐·조작 위반, ▲검사 거부·미시정, ▲피해자 10만명 이상, ▲ 2차 피해 발생, ▲위반 기간 3개월 이상, ▲기타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

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경기준(▲ 중·소기업, ▲내용·정도 경미, ▲장애·심신미약자, ▲부주의 또는 피해없음, ▲검사 전 시정·해소, ▲의견제출 기간 시정·해소, ▲기타 감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따라 기준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15조제1항 위반행위는 과태료 가중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검사 전 시정하여 위반상태를 해소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인 500만 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 부	<mark>과기준(행정안전부</mark>	· 기준('19.10.7.)>
---------	------------------------	------------------

유 형	내 용	기 준
대상 규모	중·소기업	감경(50%)
내용·정도	경미사항 3/10 미만 위반*	감경(50%)
네 중: 8포	중요사항 7/10 미만 위반*	가중(50%)
위반자 유형	장애 / 심신미약자 등	감경(50%)
태도·노력	부주의 등 + 피해없음	감경(50%)
	검사 전 시정 / 해소	감경(50%)
	의견제출 기간 시정 / 해소	감경(25%)
	은폐·조작 위반	가중(50%)
	검사 거부 / 미시정	가중(50%)
	피해자 10만명 이상	가중(50%)
결과	2차 피해 발생	가중(50%)
	3개월 이상	가중(50%)
기타 필요시	기타 필요시	감경
기뇌 글표시	기타 필요시	가중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15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 감경을 거쳐 총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과태료 처분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위반 조항	처분 조항	기준 금액(A)	가중액 (B)	감경액 (C)	최종액(D) D=(A+B-C)
제15조제1항(개인정보 수집·이용)	제75조제1항제1호	1,000	•	500	500

2. 시정명령

보호법 제64조제1항은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제1호),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제2호),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3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정을 명한다.

가. 민감정보 수집 필요시 정보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는다.

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행 결과를 제출한다.

V.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15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1항 제1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2023년 5월 10일

- 부위원장 최장혁 (서명)
- 위 원 강정화 (서명)
- 위 원 고성학 (서명)
- 위 원 백대용 (서명)
- 위 원 서종식 (서명)
- 위 원 염흥열 (서명)
- 위 원 이희정 (서명)
- 위 원 지성우 (서명)